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1993. 6. 8

全 星 勳(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目 次

I. 序論	1
II.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2
1. 北韓의 IAEA 安全協定 署名	2
2. 1993年度 팀스피리트 訓練 再開 決定	4
3. IAEA의 對北韓 特別查察 決議	5
4. 北韓의 NPT 脫退宣言	10
5. 北韓 核問題의 유엔 安保理 上程	11
III. 關聯當事國들의 立場	13
IV. 北韓 核問題의 展開方向	18
1. 概觀	18
가. 북한·미국 협상 실패 경우	18
나. 북한·미국 협상 성공 경우	20
2. 爭點別 展開方向	22
가. 북한의 NPT 脫退宣言 撤回	22
나. 팀스피리트 훈련의 段階的 縮小(영구 중지)	22
다. 核先制不使用 宣言	23
라. 북한·미국간 對話채널 格上 및 定例化	26
마. 核查察 實施	26

I. 序 論

- 북한의 「核武器擴散禁止條約」(NPT) 탈퇴선언(1993.3.12)으로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는 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對이라크 제재를 통해 관철되고 있는 시점에서¹⁾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임.
- 북한의 核武器 개발가능성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國際的 制裁措置 발동은 韓半島 情勢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신 행정부의 南北韓 關係改善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國際條約上의 義務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對北韓 核疑惑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 정책을 추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

1) 냉전 종식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제2단계 전략 무기감축협정」(START II Treaty)이 체결(1993.1.3)됨으로써, 미·러 양국은 2003년까지 전략핵탄두 수를 각각 현재 보유량의 1/3 수준인 3,500개와 3,000개로 감축하게 되었음. 또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체결(1993.1.14)로 ‘빈자의 핵무기’로 불리는 화학무기를 지구상에서 추방할 수 있게 되었음. CWC에는 4월말 현재 한국을 비롯한 142개국이 서명하였음(북한 미서명).

어든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과 解決方向을 분석·예측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Ⅱ.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 북한이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安全協定에 서명하면서 부터 북한 핵문제가 유엔 安保理에 상정된 후 북한·미국간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의 주요 事件을 5단계로 대별하여 북한 核問題의 전개과정을 검토·분석함.

1. 北韓의 IAEA 安全協定 署名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직후인 1992년 1월 7일 한국은 同年度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발표하였고²⁾ 북한도 IAEA 安全協定 서명과 核査察 수용을 약속하였음.³⁾
 - 이에 따라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同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1992년 5월 말, 7월 중순, 9월 초 등 3차례에 걸쳐 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함.⁴⁾

2) 「中央日報」, 1992년 1월 7일.

3)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2년 1월 8일.

4) 1992년 1월 22일 캔터(Arnold Kanter)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로동

- 한편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1992.3.19), 1992년 9월 30일까지 8차례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해 相互核査察 規定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査察 對象 및 方法에 대한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⁵⁾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정보교환 대상 가운데 核物質 및 核施設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는 등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를 진행하였음.⁶⁾

당 국제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미국간 첫 고위급 접촉이 미국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담에서 북한은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측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사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임. 오창림 북한 순회대사 발언, 「中央日報」, 1992년 6월 19일;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2년 6월 26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 마이니치신문 기자회견, 「한국일보」, 1992년 10월 3일.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해리슨(Selig Harrison)은 미국이 캔터·김용순 회담 이후 「당근과 채찍 정책」(carrot and stick policy)을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내부의 강온파간 갈등에 무감각해지고 개혁파의 입지를 점차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함. Selig Harrison, "Korea at the Crossroads: Absorption, Confederation or Chaos?"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원 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 5)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 입장차이에 관한 분석은,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17.
- 6) 「한국일보」, 「東亞日報」, 1992년 9월 20일.

2. 1993年度 팀스피리트 訓練 再開 決定

- IAEA의 3차례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韓·美 양국은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1992.10.8)에서 南北韓關係, 특히 相互核査察 問題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함.⁷⁾
 - －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고⁸⁾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간 대화창구를 폐쇄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팀스피리트 훈련 철회를 전제조건화함으로써 협상이 진전되지 못함.
- 한편 한·미 양국은 제 6 차 IAEA 임시사찰단이 북한에 입국하던 1993년 1월 26일 同年度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함.⁹⁾
 - － 이에 대해 북한은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¹⁰⁾

7) 이보다 앞서 1992년 5월 31일 리스카시(Robert RisCassi) 주한미군 사령관은 星條紙와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주한미군 감축의 중요 전제가 되며 한·미간에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한국일보」, 1992년 6월 1일.

8) 「로동신문」, 1992년 10월 13일.

9) 「中央日報」, 1993년 1월 26일.

10) 「로동신문」, 1993년 1월 30일.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마저 중단되었음.

3. IAEA의 對北韓 特別查察 決議

-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으로 남북대화가 경색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의 臨時查察은 계속 실시되었음.¹¹⁾
 - 제4~6차 임시사찰이 각각 1992년 11월 초, 12월 중순 및 1993년 1월 하순에서 2월 초에 걸쳐 실시됨.
- 6차례의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保有量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바, 북한이 IAEA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90g에서부터 3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인 21~24kg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큼.
 - 북한은 IAEA에 제출한 最初報告書(1992.5.4)에서 1990년에 한 번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힘.
 - 울시(James Woolsey) CIA 국장은 上院 청문회(1993.2.24)에서 북한이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11) 1992년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은 당시 평양을 방문중이던 헤이즈(Peter Hayes)에게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 되면 IAEA 사찰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2, p. 1.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증언함.¹²⁾

- 반면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前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은 부시 행정부의 최종보고서에 근거하여 북한의 핵武器 開發 現況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나, 울시 CIA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¹³⁾

12)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p. 23. 울시가 언급한 ‘충분한 핵물질’(enough fissile material)이 플루토늄 생산 이전의 단순한 핵폐기물인지 아니면 진짜 플루토늄인지 분명하지 않음.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매우 크며 울시가 ‘충분한 핵물질’이 플루토늄임을 확신했다면 구태여 ‘핵물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임.

한편 이보다 앞서 퇴임을 앞둔 게이츠(Robert Gates) CIA 국장은 1993년 1월 13일 지난 8개월간의 IAEA 사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접근과 북한의 은폐기도로 인해 중요한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는 북한이 몇달내지 1~2년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1992년 2월 자신의 평가는 북한이 그 당시까지 최소한 1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의 예측이 사실로 판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Don Oberdorfer, “Key questions unanswered about N.K. N-program: Gates,” *The Washington Post*, January 14, 1993.

13) 1993년 3월 4일 *The U.S.A. Today* 紙 주취 기자회견 발언, 「한국일보」, 1993년 3월 6일.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핵전문가인 스펙터(Leonard Spector)도 울시 국장의 발언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 1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함. 「KBS 9뉴스 인터뷰」, 1993년 3월 17일.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하지 않음. 오키노기(Masao Okonogi) 교수는 북한이 1987년부터 5MW 원자로를 가동하여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폐기물을 생산했는지라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단계에 근접했다는 주장에는 불확실한

- 한국의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이 7~22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1994~5년경 1~3개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¹⁴⁾
 - IAEA는 북한에서 채취한 플루토늄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적어도 3번(1989, 1990, 1991년)에 걸쳐 최소한 148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판단함.¹⁵⁾
- IAEA는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내용과 사찰 결과간에 “중요한 不一致”(the 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6차 임시사찰시 영변 핵단지내의 2곳의 未申告施設에 대한 사찰을 요청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함.¹⁶⁾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함. Masao Okonogi,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NPT and Japan’s Stand,”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일본의 핵전문가들은 현상에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원조없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1992년 12월 1일 東京에서 필자와의 인터뷰.

- 14) 「朝鮮日報」, 1993년 3월 18일. 이시영 오스트리아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이 수 kg의 플루토늄을 생산,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같은 사실이 IAEA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함. 「朝鮮日報」, 1993년 3월 7일.
- 15) Kim Hyeh-won, “P’yang agrees on IAEA examination of N-samples,” *The Korea Herald*, March 6, 1993, p. 2.
- 16) 북한의 IAEA 사찰요구 거부는 그동안 북한이 표명해 온 입장에 위배되는 행동임. 북한의 김영남 외교부장은 1992년 5월 방북중인 카아네기 재단 연구원들과의 면담에서 “IAEA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볼 수 있다. 원한다면 최초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은 시설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였음. S. Harrison, L. Spector and J. Leonard, *Preliminary Report: Carnegie Endowment Delegation Visit to Pyongy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 9, 1992, p. 2.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북한은

- 북한은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2곳의 시설은 軍事施設로서 절대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당한 조치가 강요된다면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은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1993년 2월 22~26일 개최된 IAEA 정기이사회 직전(2.20~21) 최학근 원자력공업 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IAEA와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IAEA를 설득하는 데 실패함.¹⁷⁾
- 이에 따라 IAEA는 북한에 대해 1993년 3월 25일까지 特別査察 수용을 촉구하는 決議案을 채택함(1993.2.25).¹⁸⁾

현재 특별사찰대상으로 지목된 시설을 포함하여 몇 곳의 시설에 대한 IAEA 관리들의 방문을 허용한 바 있음. 북한은 이미 1992년 11월 13일 최우진 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관리」(official)의 「방문」(visit)과 IAEA 「검사요원」(inspector)의 「사찰」(inspect)을 구분함으로써 IAEA 특별사찰을 간접적으로 거부하였고 IAEA가 미국이나 남한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음.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p. 3.

- 17) IAEA 정기이사회에 북측대표로 참석한 김계관 순회대사는 1993년 2월 22일 IAEA가 제기한 보고서와 사찰 결과사이의 「원칙적 불일치점」은 북측 기술자들과 사찰단 사이의 계산방법과 해석 및 평가에서 생긴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사찰단이 북한 핵설비의 구체적 운영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착오와 무성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음. 그는 또한 IAEA가 사찰하려는 2개의 장소는 핵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군사대상으로서 불일치점과 이 군사시설 사이에는 어떠한 과학적, 법률적 관련도 없다고 강조하였음. 「로동신문」, 1993년 2월 24일.
- 18) 결의안 내용은 ①IAEA와 북한간 체결된 안전협정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 요청, ②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

- 이에 대해 북한은 특별사찰 요구가 북한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정성을 잃고 있는 IAEA의 특별사찰 결의안을 수락할 수 없으며, 주권수호를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¹⁹⁾
-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IAEA는 제 3 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사찰할 권리가 없으며,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軍事施設은 IAEA 안전협정에 따른 사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²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妥當性을 결여함.
 - NPT 조약문이나 IAEA 안전협정에 IAEA가 제 3 국의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음.
 - 이와 관련 블릭스(Hans Blix) IAEA 사무총장도 이라크

이 필수적임을 강조, ③이를 위해 사무총장이 이미 취한 조치(IAEA 사무총장의 대북한 특별사찰수용 공식요청)를 지지, ④IAEA의 임무수행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와 지체없는 특별사찰 수용을 요청, ⑤중요한 불일치 해소를 위해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와 추가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고 긴급하다고 결정, ⑥IAEA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의를 계속하고 1개월내에 소집될 특별이사회에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요청, ⑦동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IAEA 현장 및 북한과 IAEA간 체결된 안전협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강구 등임. 「IAEA 결의안 2636호」 참조.

- 19) 1993년 2월 25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대표 연설, 「로동신문」, 1993년 2월 27일.
- 20) 북한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로동신문」, 1993년 2월 8일; 최우진 핵통제 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IAEA 특별사찰 관련 성명, 「로동신문」, 1993년 2월 20일; 북측대표단장 IAEA 이사회 연설, 「로동신문」, 1993년 2월 24일.

의 예를 들면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²¹⁾ 앞으로도 IAEA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제3국 정보에 대한 IAEA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NPT나 안전협정 조약문에 군사시설이 사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IAEA 현장도 사찰요원이 언제든지 어떠한 시설도 사찰할 수 있다고 명시함.

○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팀스피리트 야외기동훈련(3.9~18)이 개시되기 하루 전인 1993년 3월 8일 군최고사령관 김정일 명의로 準戰時狀態를 선포하였으며,²²⁾ 3월 10일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로 IAEA에 特別査察 拒否를 공식 통보함.

4. 北韓의 NPT 脫退宣言

○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訓練 재개와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特別査察 강요를 비난하면서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음.²³⁾

21)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9 (November, 1991), pp. 3~6.

22) 「로동신문」, 1993년 3월 9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3월 24일 해제하였음.

23) 「로동신문」, 1993년 3월 13일. 1992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Peter Hayes)는 북한관리들로부터 만약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NPT를 탈퇴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같은 북측의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John Fialka, "Security Council Asked to Review North Korea,"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April 2~3, 1993.

- 그러나 북한은 다음과 같이 協商의 可能性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탈퇴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이 核威脅을 중지하고 IAEA가 獨自性和 公正性を 회복할 때까지 NPT 탈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를 부기함.
 - 또한 3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NPT 탈퇴 지지성명을 발표한 것²⁴⁾을 제외하고는 NPT 탈퇴와 관련된 북한의 모든 의사표명은 協商에 의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특히 북한은 NPT 탈퇴 번복을 위한 條件으로 ①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지, ②남한내 미군 핵무기와 핵기지의 공개, ③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④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등과 같은 구체적 항목까지 제시하고 있음.²⁵⁾

5. 北韓 核問題의 유엔 安保理 上程

- IAEA 이사회는 특별사찰을 거부한 북한을 안전협정 불이행 국가로 규정, 북한 핵문제를 유엔 安保理에 상정한다는 決議案(1993.4.1)을 채택함.
 - 이에 대해 북한은 IAEA의 임시사찰을 반대한 적이 없으

24) 「로동신문」, 1993년 3월 14일.

25) 이철 제네바주재 대사와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의 기자회견, 「世界日報」, 1993년 3월 16일; 「每日新聞」, 1993년 3월 17일;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며 NPT 탈퇴후에도 안전협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서둘러 유엔 안보리에 상정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함.²⁶⁾

- 유엔 안보리는 北韓 核問題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왔음.
 - 첫 단계 조치로 NPT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비핵화 공동 선언」을 지지하며 핵사찰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IAEA가 건설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議長聲明(1993.4.8)을 발표함.²⁷⁾
 - 이어서 1993년 5월 11일 북한에 대한 NPT 탈퇴결정 재고와 IAEA 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제재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의 제 1 차 決議案(제825호)을 채택함.²⁸⁾
- 유엔 안보리의 제 1 차 결의안 채택 이후, 관련당사국들간 대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음.
 -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남북간 논의를 위해 南北高位級 代表

26)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27) 「中央日報」, 1993년 4월 3일. 안보리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28) 「中央日報」, 1993년 5월 12일. 15개 이사국중 13개국 이 동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으며 중국과 파키스탄이 기권하였음.

- 會談을 제의하였고(1993.5.20),²⁹⁾ 북한의 特使交換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를 핵문제 논의를 전제로 수용함(1993.6.2).³⁰⁾
- 북한은 제 7 차 IAEA 臨時査察(5.8~15)을 허용하고 이와 별도로 IAEA측과 핵사찰 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으며,³¹⁾ 남북간 頂上會談 문제와 핵문제를 비롯한 기타 懸案問題들을 타결하기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함(1995.5.25; 5.31; 6.4).³²⁾
 - 한편 미국의 갈루치(Robert Gallucci)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 1 부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미국간 高位級會談이 2차례(1993.6.2; 6.4) 개최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Ⅲ. 關聯當事國들의 立場

- 북한 핵문제의 관련당사국들로는 北韓을 비롯하여 북한이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美國, 핵사찰과 관련된 IAEA, 북한의 核開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韓國, 북한에 실질

29) 황인성 국무총리 대북서한, 「中央日報」, 1993년 5월 20일. 이보다 앞서 한완상 부총리는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미국간 접촉 결과와 관계없이 남북간 직접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음. 「東亞日報」, 1993년 5월 15일.

30) 황인성 국무총리 대북전화통지문, 「中央日報」, 1993년 6월 2일.

31) 허중 유엔주재 차석대사 연합통신 인터뷰, 「世界日報」, 1993년 5월 15일.

32) 강성산 정무원총리 대남서한, 「한겨레신문」, 1993년 5월 26일; 「世界日報」, 1993년 6월 1일; 「東亞日報」, 1993년 6월 5일.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中國, 그리고 러시아와 日本을 들 수 있음.

○ 북한은 IAEA의 對北韓 特別査察 실시 결정으로 야기된 국제 사회의 核査察 압력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 따른 威脅을 타개하기 위해 NPT 탈퇴라는 배수진을 칩으로써 핵문제를 對美協商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음.

－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핵위협 중지와 IAEA의 독자성 회복시까지 탈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但書を 부기하였고, 탈퇴선언 며칠후부터는 각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NPT 탈퇴 번복을 위한 구체적 條件을 제시함.³³⁾

－ 또한 북한은 핵문제는 “본질상 우리와 미국사이의 문제”라고 규정하고,³⁴⁾ 問題解決 여부는 북한·미국간 協商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³⁵⁾

－ 한편 IAEA의 사찰과 관련, 북한은 그 동안 실시되어 온 臨時査察은 계속 수용하고,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도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큼.

○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범세계적 「핵무기확산금지체제」(이하 「핵금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과 NPT 복귀 문제는 協商對象이 아니라는 입

33) 「世界日報」, 1993년 3월 16일;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9일.

34)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3년 4월 6일.

35)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 「로동신문」, 1993년 4월 11일; 김완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 회견,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18일.

장임.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NPT 체제 완전 이탈이 가져올 「핵 금체제」의 결함 및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등 波及效果를 우려하여 국제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함.
-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6월 중순까지 외교적 노력에 의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되, 실패할 경우 國際的 制裁措置를 강구할 것임.³⁶⁾

○ IAEA는 대북한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및 북한 핵문제의 安保理 상정으로 인해 야기된 緊張狀況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음.

- IAEA는 북한에 대한 기술원조 중단, IAEA 회원자격 박탈과 같은 자체 제재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한 임시사찰을 계속 실시하는 한편, 특별사찰 실시형식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북한 핵문제가 平和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하

36)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 국무장관은 대북한 경제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석유·가스과 같은 원자재와 식량이 대북한 경제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中央日報」, 1993년 3월 26일. 로드(Winston Lord)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현재 경제제재를 준비중이며 북한이 경제제재 이전에 탈퇴선언을 번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中央日報」, 1993년 4월 1일.

- 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對北韓 制裁가 결의될 경우 동참 하되, 軍事的 手段에 의한 문제해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
- 한국은 한승주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시(3.23~30) 북한의 NPT 복귀와 特別査察 수용을 條件으로 ①핵사찰을 남북한 군사기지로 확대, ②팀스피리트 훈련의 명칭·장소·규모 변경을 통한 축소·조정, ③대북한 핵위협 제거, ④경제협력 확대, ⑤북한과 한·미·일간 관계개선 등 대북한 유화책을 발표하였음.³⁷⁾
 - 중국은 남북한의 核武器 보유 반대와 韓半島의 非核化 지지라는 기본 원칙하에 국제적인 대북한 압력행사에 반대하고 관련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IAEA 이사회 표결(1993.4.1)에서 반대표를 던졌으나,³⁸⁾ 4월 8일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동의하였고, 5월 11일 제1차 대북한 결의안 채택시에는 기권하였음.
 -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표출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國際輿論과 대북한 압력사용 반대라는 基本立場을 각각 북한과 미국에 대한 카드로 활용하면서 양국사이의 仲裁 役

37) Don Oberdorfer, "South Korea Urges 'Stick and Carrot' On Nuclear Issue," *The Washington Post*, March 30, 1993.

38) 35개 이사국중 중국과 리비아가 반대하였으며 28개국이 찬성, 4개국이 기권, 1개국이 불참하였음.

割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독자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과 같이 북한 핵문제가 범세계적 「핵금체제」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을 우려하고 있음.³⁹⁾
- 일본은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북한 關係正常化 교섭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바,⁴⁰⁾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북한 핵문제가 韓·美·中 3국을 중심으로 협의됨으로써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綜合的으로 볼 때, 북한 핵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기여도에 따라 關聯當事國들의 役割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 북한 핵문제의 핵심 당사국들은 北韓과 美國이며, 여기에 사찰과 관련하여 IAEA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 韓國과 中國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 핵문제가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輿件을 조성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음.
 - － 러시아와 日本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음.

39) 1993년 4월 4일 미국·러시아 뱅쿠버 정상회담 선언,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6일.

40)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기자회견, 「한국일보」, 1993년 3월 2일;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외상 발언, 「朝鮮日報」, 1993년 3월 23일.

IV. 北韓 核問題의 展開方向

1. 概 觀

- 북한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北韓·美國間 協商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양측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北韓 核問題의 展開方向을 전망하고자 함.

가. 북한·미국 협상 실패 경우

- 미국이 북한의 要求條件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북한도 NPT 탈퇴를 고수하고 特別查察을 거부한다면 양자간 협상이 실패할 것인 바, 이 경우 유엔 안보리를 통한 對北韓 制裁가 불가피할 것임.
- 유엔 안보리는 헌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①헌장 제41조에 의거한 非軍事的 制裁措置와 ②헌장 제42조에 의거한 軍事的 制裁措置를 발동할 수 있음.
 - 북한의 NPT 탈퇴와 특별사찰 거부는 武力行爲를 수반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軍事的 緊張을 조성하는 동시에, 범세계적 「핵금체제」에 대한 도전행위인 바,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조치는 ①유엔이 「평화에 대한 위

협」으로 결정한 사태에 대한 대응시 軍事制裁를 취한 先例가 없고, ②이에 대한 한국·중국 등의 반대입장과 전쟁 발발 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임.

- 대북한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中國이 경제제재와 같은 강도높은 유엔의 制裁決議案 채택에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함.

- ①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북한 압력반대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음, ②경제제재로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경우 대규모 난민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③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완전붕괴보다는 중국식 변화 희망.

- 중국이 기권하여 유엔 안보리의 制裁決議案이 채택될 경우 대북한 제재는 인적 교류 제한과 외교 및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을 보일 것인 바, 制裁의 強度를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인적 교류 제한(1단계) → 경미한 외교적 제재(2단계) → 경제제재(3단계)」의 순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큼. 한편 同 제재조치들이 복합적으로 병행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임.

- 1단계: ①북한 항공기 운항과 선박 기항 금지, ②북한 주민의 입국 금지, ③북한주민의 활동 제한 및 감시 강화 등.
- 2단계: ①유엔 등 국제기구와 현지국에서 북한 외교관의 활동 및 여행 제한, ②신규 아그레망 접수 및 발급 거부,

③정부 고위관리의 방문 거부, ④북한내 외교공관 축소 등.

- 3단계: ①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교역금지, ②무기금수, ③ 원유 등 에너지와 식량 공급 중단 등.⁴¹⁾

○ 중국이 拒否權을 행사하여 안보리에 의한 대북한 제재가 발동될 수 없는 경우, 한·미·일·러 등 북한 핵문제의 관련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개별적 또는 공조적 制裁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G-7 외무장관들은 東京會議(1993.4.14)에서 북한이 NPT 탈퇴를 번복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⁴²⁾

나. 북한·미국 협상 성공 경우

○ 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당사국 가운데 문제를 야기시킨 북한이 협상에 의한 問題解決을 원하고 있고 IAEA·한국·중국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문제해결의 관건은 쌍방이 상대측의 要求事項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하는 것임.

41) 한편 경제제재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북한의 계층이 일반주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만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재에 대한 당위성 문제가 한국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2) 「世界日報」, 1993년 4월 15일.

- 북한·미국간 協商의 議題는 대체로 13가지 정도임.
 -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8가지 협상의제는 양자간 협상에 서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될 수 있는 사항들임: 北韓의 決定事項으로서 ①NPT 탈퇴선언 철회, ②특별사찰 수용(2곳의 미신고시설), ③임시사찰 수용(5MW 원자로); 韓國과의 協議事項인 ④상호사찰 실시; 그리고 美國의 결단이 필요한 ⑤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 수용, ⑥탐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⑦핵선제불사용 선언, ⑧북한·미국간 대화채널 격상 및 정례화.
 - 이상의 8가지 주요 協商議題가 타결될 경우, ①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②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해소 및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③미국의 핵우산 철폐, ④북한의 사회주의 존중, ⑤북한과 한·미·일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확대 등 5가지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그다지 문제시되지 않을 것임.
- 8가지 협상의제 가운데 사찰과 관련된 4가지 의제(특별사찰, 임시사찰, 상호사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를 「査察」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協商結果를 구성하는 요소는 대체로 5개 주요 협상의제로 요약될 수 있는 바, 북한 핵 문제는 이들 5개 협상의제가 “하나의 묶음”(a package)으로 합의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일련의 북한·미국간 회담이 진행되면서 NPT 탈퇴선언 철회

회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및 핵선제불사용 약속 등 政策宣言의 性格의 협상의제가 우선 타결되고,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한 핵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 사찰협상의 원칙과 기본틀 정도에 합의하게 될 것임.

- 핵사찰과 관련, 미국의 특별사찰 수용 요구와 북한의 주한 미군기지 사찰요구가 동시에 충족되기 위하여, IAEA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관련당사국들의 체면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同 회담에 關係改善 會談 機能을 부가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한 별도의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음.

2. 爭點別 展開方向

가. 북한의 NPT 脫退宣言 撤回

-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

나. 팀스피리트 훈련의 段階的 縮小(영구 중지)

- 미국이 영구중단을 최종목표로 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시간이 갈수록 한국이 대북한 軍事力 優位를 점유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으며,⁴³⁾ 대부분의 미군부 인사들도 비공개 석상에서 한반도의 戰爭抑制 手段으로서 팀 스피리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음.⁴⁴⁾

다. 核先制不使用 宣言

-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책에는 두 종류가 있음.⁴⁵⁾ ①核武器로 공격받거나 위협받는 핵비보유국을 돕기 위해 유엔 憲章에 따라 안보리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積極的 安全保障」(positive security assurance), ②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에 대해 직접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 「消極的 安全保障」(negative security assurance).
- 그러나 현재 중국만이 핵비보유국에 대한 核武器 不使用 宣

43) 예를 들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메네트리(Louis Menetrey) 장군은 1989년 “[현재의] 기초가 계속 유지된다면 1990년대 중반에 한반도에는 미국없이도 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p. 98에서 인용.

44) Michael Mazarr, *News Briefing with the Arms Control Association* (Washington, D.C.: Federal Information Systems Corporation), April 6, 1993, p. 12.

45) Seong Whun Che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Situation in East Asia,” *12th PPNN Core Group Meeting: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Keidanren Guest House, Shizuoka, Japan, November 28~29, 1992, pp. 16~17.

함을 하였을 뿐,⁴⁶⁾ 여타 4개 핵보유국들은 여러 가지 단서가 붙은 「條件附 消極的 安全保障」을 표명함.

－ 미국은 자국이나 자국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와 同盟關係에 있거나 지원을 받는 핵비보유국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 한 해당 핵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⁴⁷⁾

- 북한이 미국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핵위협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核을 보유한 중국 및 러시아와 同盟關係에 있는 북한의 경우, 우발적 충돌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도 미국의 핵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임.⁴⁸⁾

46) William Epstein,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A United Nations Perspective* (Cambridge, Mass.: Gunn & Hain, Publishers, 1984), p. 31.

47) ACDA, "Statement by Secretary of State Vance: US Assurance on Non-Use of Nuclear Weapons, 12 June 1978," in *Documents on Disarmament 197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참조.

48) 또한 북한은 미국의 지속적인 핵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아내려 하는 것임.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Leonard Spector and Jacqueline Smith,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Vol. 21, No. 2 (March 1991), p. 9 참조. 최근에는 미 전략사령부의 버틀러(Lee Butler) 장군이 전략핵무기의 목표에 구소련 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시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잠재 적대국가들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Eric Schmitt, "Head of U.S. Nuclear Forces Plans for World of New Foe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1993.

-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⁴⁹⁾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핵불사용 보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인 바,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는 核先制不使用(no-first-use) 宣言이 타당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 이는 한국에 대한 核雨傘 公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바, 미국은 핵선제불사용을 북한에 제시할 것으로 보임.⁵⁰⁾
 - 북한으로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이 함께 실시되는 상황에서 핵선제불사용까지 얻어냄으로써 미국의 核威脅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49)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하려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 A. Platias and R. Rydell, “International Security Regimes: the Case of a Balkan Nuclear-free Zone,” in D. Carlton and C. Schaerf (eds.), *The Arms Race in the 198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 292.

50) 핵선제불사용 선언은 미국의 핵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바, 미국 행정부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이 범세계적 「핵금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핵비보유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실험 전면금지」와 함께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임. 미국은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한반도에서부터 이러한 정책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미 설득외교가 필요함.

라. 북한·미국간 對話채널 格上 및 定例化

- 북한·미국간 협상이 성공할 경우, 핵문제 해결을 위한 高位級接觸은 양국간 關係改善을 위한 協商으로 이어지거나 별도의 회담채널이 가동될 수 있을 것임.
 - 로드(Winston Lord) 신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3월 31일 북한이 핵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경우, 관계개선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음.⁵¹⁾

마. 核査察 實施

- 현재 사찰 관련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軍事施設이라고 주장하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실시로서,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허용도 부분적으로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유도하기 위한 宥和策의 성격을 지님.
 - 따라서 査察對象을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로, 査察回數를 첫 1회로 한정함으로써 핵사찰 실시에 대한 전망을 단기적 관점으로 국한시킴.

(1) 특별사찰(2곳의 미신고시설)

- IAEA 이사회의 특별사찰 결의는 핵무기확산방지를 위한 국

51) Winston Lord, "A New Pacific Community: Ten Goals for American Policy," *Opening Statement at Confirmation Hearings*, U.S.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31, 1993.

제적 결의의 시금석으로 간주되는 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NPT 탈퇴선언 철회와 함께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 실시가 불가피함.

- 軍事施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찰기간중 일부 시설을 가리거나 非武裝化하는 등의 절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 IAEA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特別査察이라는 명칭에 구애됨 없이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샘플 채취가 가능하면 된다는 입장임.⁵²⁾
-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실시되어 북한의 은폐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核能力이 투명하게 노출될 경우 북한의 핵카드는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될 것임.
- 그러나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기존의 要求事項들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북한은 기꺼이 은폐사실을 시인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사실을 들어서 虛僞報告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선전하려 들 것임.
 - 한편 북한은 추출한 플루토늄을 IAEA 감시하에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 核能力에 대한 불확실성 만큼 효과적인 핵카드가 되지는 못할 것임.

52) 블릭스(Hans Blix) 사무총장 기자회견, 「中央日報」, 1993년 5월 21일.

(2) 임시사찰(5MW 원자로)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1986년부터 가동한 영변소재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 채취를 위한 臨時査察도 함께 실시되어야 함.
 - 원자로 가동후의 核廢棄物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료이므로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채취·분석해서 북한의 핵폐기물 보유 총량을 확인해야 함.
 - 북한과 IAEA는 1993년 봄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 샘플을 채취·분석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⁵³⁾

(3) 상호사찰

- 북한은 「의심동시해소원칙」하에 한국이 북한의 영변 核施設을 사찰하고 북한은 남한내 모든 美軍基地를 전면적으로 동

53)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로의 실제 가동기간과 핵폐기물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재처리후 폐기물 저장소로 의심되고 있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5MW 원자로 연료봉의 샘플 채취·분석은 IAEA가 판단하고 있는 「중요한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 있어 같은 기능을 함.

그런데 IAEA가 북한과 합의한 연료봉 분석에 앞서 성급하게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고집하여 유엔 안보리 상정까지 초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된 면이 없지 않으며 핵문제를 ‘서둘러’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면 타당함. 헤이즈(Peter Hayes)는 IAEA의 이러한 성급한 결정을 전술적 실수로 간주하고 그 이유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함: ①IAEA가 이라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음, ②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③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추진하게 만든 역사적 기원과 지역적 상황에 대한 서방관리들의 인식부족. 1993년 4월 20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시에 사찰할 것을 주장해 온 반면, 한국은 軍事施設을 포함한
성역없는 사찰과 特別査察을 주장해 왔음.

- 그러나 사찰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협상의제가 연계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구도내에서 相互査察이 협상타결의 걸
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인 바, 남북한이 기존의 강경 입장을
수정할 것으로 보임.

(4) 주한미군기지 사찰

- 남북한 상호사찰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모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全面同時査察 주장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큼.
 - 1992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Peter Hayes)에 따르
면 북한이 남한의 사찰대상 군사기지수를 1~2개로 제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⁵⁴⁾
 - 결과적으로 남북한 상호사찰시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대상이 2곳인 점을 감안할 때, 우선 주한미군기지도 2곳
정도가 상호사찰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⁵⁵⁾

54) Peter Hayes, *Nuclear Inspections in Korea: Rough Waters Ahead?*, p. 4.

55)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한 적도 있음. 1991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헤이즈 박사에 따르면 김용순
당시 로동당 국제부장은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한국의 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함. Peter Hayes, *North Korea and Bilateral
Nuclear Inspections: An Interview with Kim Yong Sun* (Berkeley, CA:
Nautilus Pacific Research), November 1991, p. 4.

- 한편 한국도 보다 완화된 사찰제도를 제시하게 될 것임.

(5) 협상가능한 사찰방안

- IAEA에 허위로 보고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2곳의 미신고시설과 5MW 원자로에 대한 IAEA의 사찰과 남북한 相互査察이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큼.
 - 이 경우, IAEA의 特別査察 의지가 관철됨과 아울러, 북한은 기존의 관례대로 군사시설에 대한 IAEA 「관리」들의 「방문」만을 허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했다는 명분도 함께 얻을 수 있음.
- IAEA 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실시될 경우, 여섯 가지의 실시가능한 査察方案이 고려될 수 있음.
 - 미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상호사찰에 개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해 왔는 바,⁵⁶⁾ 相互査察의 形式이나 方法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한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方案 1: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하며 같은 사찰대상에 대해 남북한 상호사찰도 실시되는 것으로서 북한과 한국은 환영(○)할 것이나, IAEA는 주한미군기지가 核活動과 관련없는 순수 군사기지라는 점

56) 예를 들어 솔로몬(Richard Solomon)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발언 참조, 「한국일보」, 1992년 6월 9일.

방 안	북 한	한 국	IAEA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 찬성, △: 유보, ×: 반대)

에서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음.⁵⁷⁾ 상호사찰에 IAEA 사찰요원을 참가시키는 것도 방안 1의 변형으로 고려 가능함.

- 方案 2: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함께 사찰하는 대신, 북한의 주한미군기지 사찰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환영(○)할 것이나, 한국은 상호사찰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반대(×)할 것이며, IAEA는 방안 1에 서와 같이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음.
- 方案 3: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IAEA의 사찰만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기지를 직접 사찰하길

57) IAEA의 주한미군기지 사찰은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스펙터(Leonard Spector)에 의해 제안된 바 있음. 「朝鮮日報」, 1993년 3월 18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경우, IAEA가 유보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큼: ①명백한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은 IAEA의 오랜 관례에 어긋남; ②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이 다른 지역의 IAEA 사찰활동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중동국가들이 사찰을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음.

원하는 북한은 반대(×)할 것이고, 상호사찰을 원하는 한국 역시 반대(×)할 것이며, IAEA는 방안 1에서와 같이 유보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음.

- 方案 4: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해 2곳의 미신고시설과 주한미군기지를 동시에 사찰하되, IAEA는 2곳의 미신고시설만 사찰하는 것으로서 북한과 한국은 환영(○)할 것이며, IAEA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으므로 환영(○)할 것임.
 - 方案 5: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을 사찰하고, 북한은 주한미군기지만 사찰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환영(○)할 것이나, 한국은 상호사찰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반대(×)할 것이며, IAEA는 환영(○)할 것임.
 - 方案 6: IAEA가 2곳의 미신고시설만 사찰하는 것으로서 방안 3에서와 같이 북한과 한국은 반대(×)할 것이나, IAEA는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이상의 여섯 가지 방안중 관련당사국들의 입장이 절충되어 실현가능성이 가장 큰 방안은 남북한과 IAEA가 모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네번째 방안임.
- 즉 IAEA는 2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 원자로의 연료봉 샘플 채취를 위한 臨時査察을 함께 실시하고, 남 북한은 相互査察을 통해 한국이 2곳의 未申告施設을, 북한이 駐韓美軍基地를 사찰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 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
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
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
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
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 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치는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 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資 料〉

-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統一情勢分析 93-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仁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3년 6월 일

發行日 1993년 6월 일
